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4-0317호 (5893,'25.08.26~'26.08.25)

상품안내

삼성사이버패키지 (대형)

■ 상품안내

· 최근 기업 성장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인 사이버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사이버 영역 특성 상 공격이 방어보다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사이버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재정적 손실 등을 포함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020년 Rank	2024년 Rank
① 인력관리	**① 사이버 보안**
② 공급망	② 운용 문제
③ 지역주의로의 회귀	③ 신흥/혁신 기술
④ 환경, 기후변화	④ 지정학적/정치적 불확실성
⑤ 사이버 보안	⑤ 환경, 기후변화

* 출처 : KPMG 2021, 2024 CEO Outlook

· IT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고 다양하게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공격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다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 피해자 보상 등의 유형적 손실과 지적재산 도난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의 무형적 손실을 사이버 보험 가입을 통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삼성SDS 보안사업담당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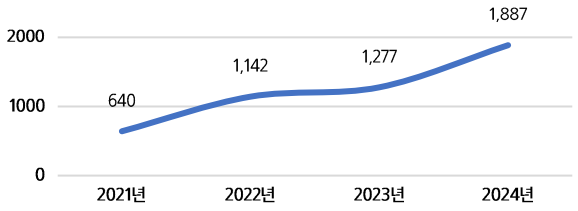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3, 2024년 하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글로벌 랜섬웨어 피해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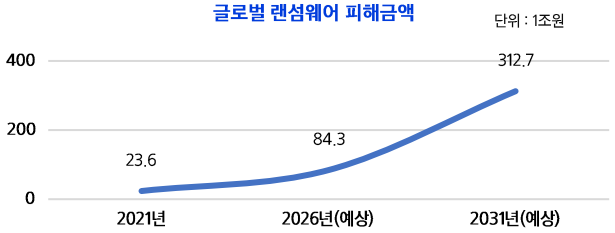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국내 사고사례)

'23년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유출	'23년 통신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장애
온라인 오픈 채팅방의 참여자 정보 획득으로,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6만 5천여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 60여만 건 유출 및 디도스 공격으로 총 5회, 약 120분 동안 인터넷 서비스 중단 (과징금 68억)

(해외 사고사례)

'24년 미국 통신기업 개인정보 유출	'24년 인도네시아 국가 데이터센터 중단
해커가 절취한 73백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데이터 거래 브로커' 들이 볼 수 있도록 사이버 범죄포럼에 공개 (추정 피해: 약 75억)	해커그룹 '록빗(Lockbit)'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총 210개 공공기관의 각종 온라인 서비스 7,000개 중단 (추정 피해: 약 102억)

*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사고유형 및 피해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사고 관련 법률환경 변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산정방식 강화 등 국내 사이버 사고 관련 법률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 [국내] 사이버 관련 법률 변화 및 과징금 부과 현황

사이버 사고관련 신고 의무화 등 법률 규제 강화 및 건 당 과징금 규모 증가 추세

	2016년 [자율공시]	2022년 [의무공시]	2024년 [유출신고 의무화]
대상자	총 91개사	총 655개사	전 사업자
내용	매년 하반기 현황 공시		72시간 이내 최초 신고
과징금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개정]

과징금 부과 추이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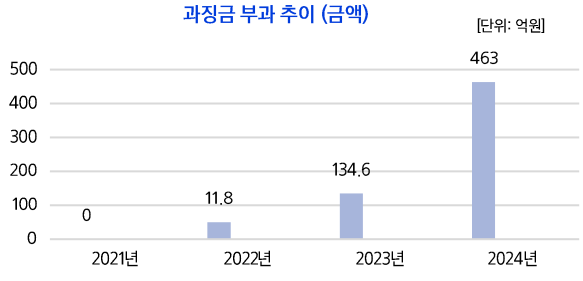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자료 '과징금 과태료 부과내역'

삼성화재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4-0317호 (5893,'25.08.26~'26.08.25)

상품안내

삼성사이버패키지 (대형)

■ 주요 담보내용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3rd party)	기업의 직접적 재정 손실 (1st party)
[Section 1] 개인정보 유출배상 Privacy Breach Liability Coverage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책임	**[Section 5] 개인정보유출 대응 비용** Privacy Breach Protection Coverage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및 행정기관 대응비용
[Section 2] 기밀정보 유출배상 Confidentiality Breach Liability Coverage 기술, 공정, 도면 등 경영 및 기밀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책임	**[Section 6] 데이터 손실/도난** Loss or Theft of Data Coverage 손상 데이터 복구 및 재생, 소프트웨어 복구비용
[Section 3] 네트워크보안 배상책임 Network Security Liability Coverage 피보험자의 시스템 보안 실패 및 위반으로 인한 제3자 시스템의 데이터/서비스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	**[Section 7] 기업휴지손해**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Section 1, 2, 5, 6 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기업휴지손실
[Section 4] 미디어 배상책임 Media Liability Coverage Media / Digital contents 로 인한 제3자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Section 8] 사이버 협박/갈취** Cyber Extortion Coverage 랜섬웨어(Ransomware) 등의 손실에 대한 협상 및 대응비용
	[Section 9] 평판보호비용 Reputational Risk Coverage 사고 이후 평판 관리를 위한 광고/홍보 및 마케팅 비용

※ 해당 상품은 종합성 보험으로 Section 별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각 Section 의 면책사항
2) 프로그래밍 에러
3) 신체 상해 및 재물 손해 (특별약관으로 담보 가능)
4) Outsourcing Provider 의 인적 과실

■ 추가 가입 특약

1) 전문직업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2) Cyber Theft 담보 특별약관 (자기손해 보장)
3) 재물손해 및 신체상해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4) 서비스 실패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 본 안내서의 상품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및 가입 시 필요서류

· 가입대상

1. 사이버 리스크 관련 의무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담보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
2. 업종(금융 및 보건 산업 외) 특성 상 민감정보 다량 보유로 인해 정보유출 등 위험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
3. 매출액 1천억 초과 수준의 대기업으로 보다 전문적인 사이버 위험평가 진단 및 위험관리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 가입 시 필요서류

1. 삼성사이버패키지 설문서 ※ 전문 IT업체를 통한 사이버 리스크 진단 가능

상품안내

삼성사이버패키지 (대형)

■ 알아 두실 사항

• 가입전 필수 확인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사항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해 모집종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집종사자에 관한 사항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직원, 삼성화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를 말하며 보험회사 직원을 제외한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기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④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상기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상품안내

삼성사이버패키지 (대형)

■ 알아 두실 사항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법상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화 : 1588-5114, 인터넷 :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삼성화재 (TEL : 1588-5114 / 인터넷 : www.samsungfire.com>고객센터>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 **해약환급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2025년 9월 기준임

- 본 안내서의 상품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특별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여 읽어 보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